

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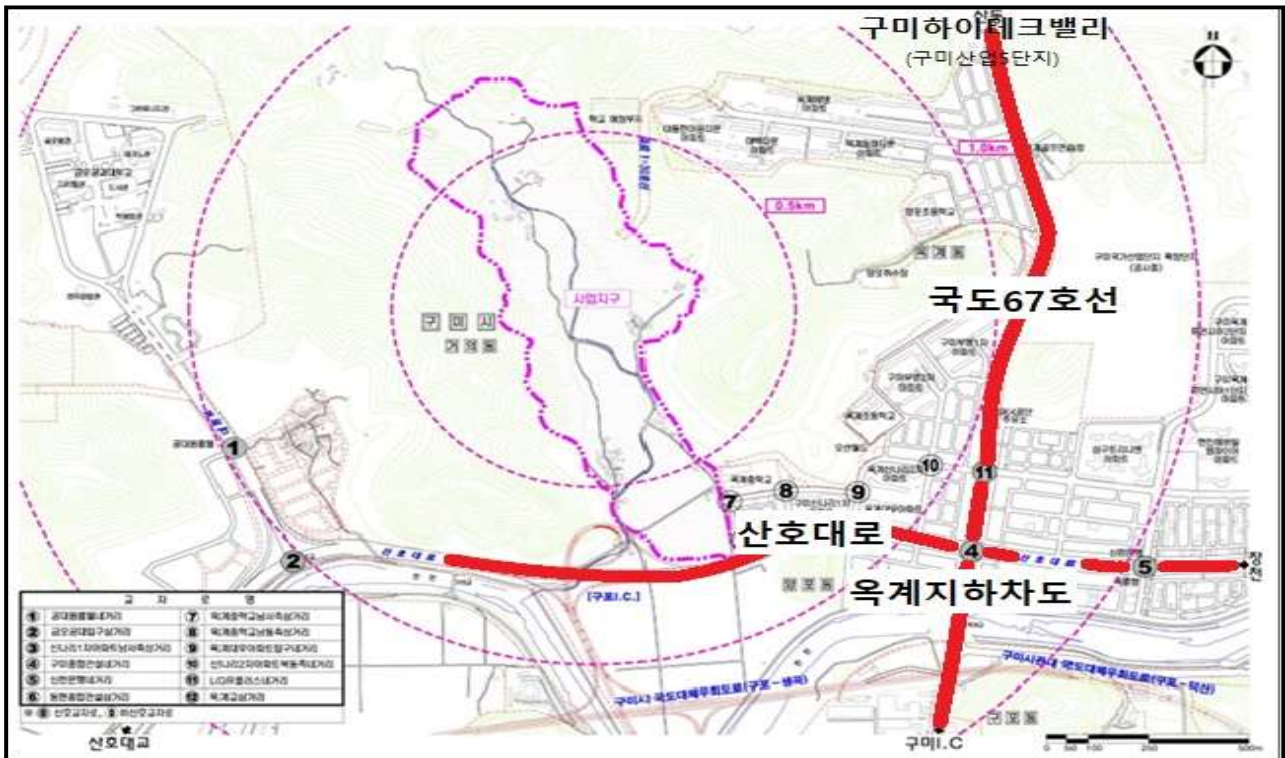
□ 사례명 : 교통량 분산방안 수립과 세출절감

구 분	주 요 내 용
① 사업 개요	○ 사 업 명 :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○ 위 치 : 구미시 거의동 일원 ○ 사업내용 : 도시개발 460,751m², 계획인구 6,293인(2,331세대) ○ 사업기간 : 2017. 12. ~ 환지처분일까지 ○ 사 업 비 : 814억원 ○ 사업방식 : 환지방식(평가식) ○ 시 행 자 : 구미시장(도시계획과장)
② 추진 경과	○ '17. 1. 25. :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 수립·고시 - 대도시권(대구권) 범위에 구미시가 포함되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지역으로 변경 ○ '17. 12. 7. :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○ '18. 1. 29. :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(거의1지구) ○ '20. 5. 20. :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연기 신청(거의1지구) ○ '20. 6. 30. : 국도대체 우회도로(구평IC~거의IC) 개통 ○ '21. 6. 30. : 국도대체 우회도로(거의IC~송림IC) 개통 ○ '21. 12. 27. :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검토(1,478백만원)
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	○ 구미 국가산업단지(제2·3·4·확장단지 및 하이테크밸리)가 확장되면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도67호선의 상습정체 ○ 국도(33호선)대체 우회도로의 개통으로 우회도로와 연결된 산호대로 및 국도67호선 교통정체 ○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, 관련법률 검토, 사례분석,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한 외부 교통개선대책 마련
④ 우수사례 내용	○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된 도시계획 도로(중로1-30호선)를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로 인정받아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의 전액공제 후 도로개설 비용에 충당하여 세출예산 절감효과 - 공제금액(1,478백만원)을 도로개설 비용에 활용!
⑤ 성과	○ 전액공제 받은 광역교통 시설부담금(1,478백만원)을 도시 계획도로(중로1-30호선)개설 비용에 충당하여 예산 절감 ○ 도시개발사업 주변 기존도로의 교통량 분산효과

「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」과 연계한 교통량 분산방안 수립과 세출절감

1. 과제 선정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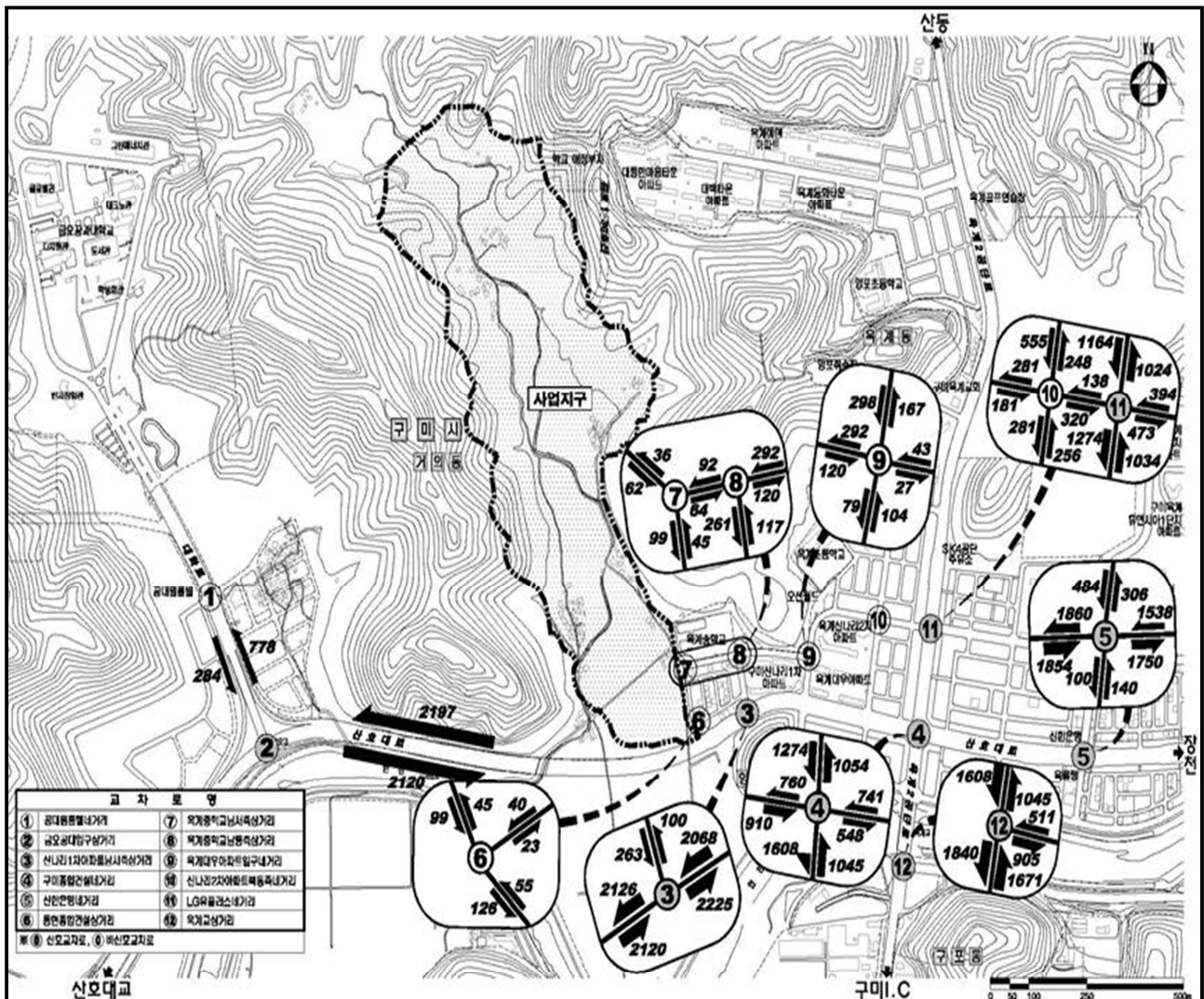
- 국가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도67호선과 산호대로가 연결되는 옥계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정체되고, 산호대로에 국도(33호선)대체 우회도로가 연결(개통)되면서 교통정체 심화로 물류 및 교통의 이동기능이 저하되어 교통개선 대책이 요구됨
- 「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」이 추진되면서 준공 시 출·퇴근시간 교통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개선 요구(민원)가 빗발치나 산호대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 과다로 인하여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



- 상습 정체구간의 근본적인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협업을 진행하고 「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」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교통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함

2. 문제원인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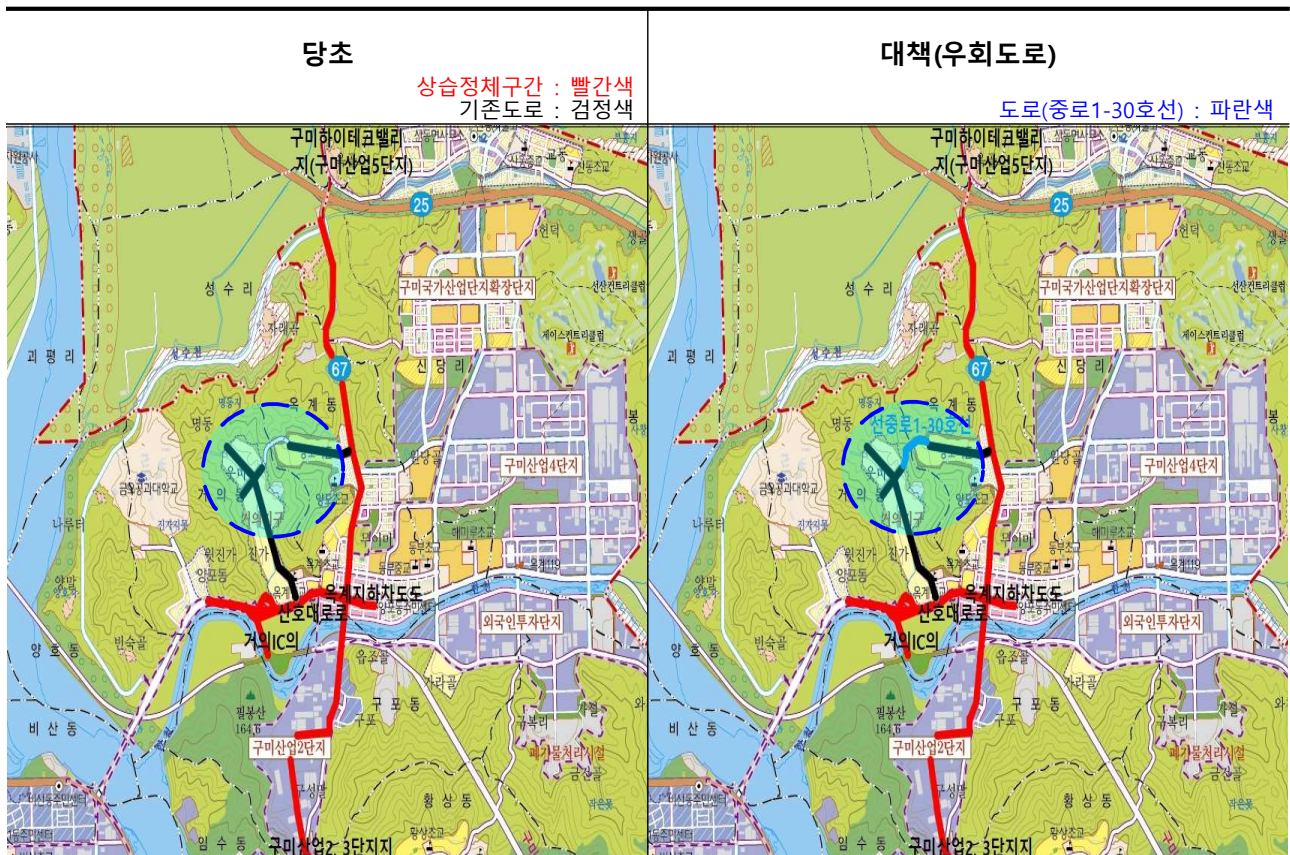
- 구미 국가산업단지(제2·3·4·확장단지 및 하이테크밸리)가 확장되면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도67호선의 교통정체로 인하여 물류 및 교통 이동기능 저하
- 국도(33호선)대체 우회도로의 거의교차로가 개통되면서 국도67호선, 산호대로 등 거의동 일원의 도로가 상습적으로 정체되어 민원발생
-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고, 교통량을 바탕으로 도시개발 사업지에서 산호대로로 연결되는 입구 신설교차로 1개소가 향후 개설될 경우 사업지 인근 도로의 가로 및 교차로의 서비스수준 다소 저하될 것으로 검토됨



※ 「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」 주변 교통량 조사결과

3. 방안 마련 및 실행

- 「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」 구역 인근도로의 교통흐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
 - 옥계지하도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여 국도67호선와 산호대로를 연결하는 방안검토
 - 국도67호선에 연결된 기존도로와 도시개발구역 내 신설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대한 교통분산 효과 검토
 - 기술사, 교수 등의 교통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
- 도로(L=520m, B=20m)개설할 경우, 배후 연결로가 확충되어 우회 도로의 기능을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 기대
- 도로(중로1-30호선)개설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
 - 행정절차(산지전용, 환경영향평가 등) 사전검토



4. 장애극복

○ 문제점

-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력에 비하여 사업계획 수립된 우회도로의 연결을 위한 사업비(7,550백만원)가 과다하여 사업추진 지연

○ 해결방안

- 도로(중로1-30호선)를 개설하여 산호대로와 국도67호선이 우회도로로 연결될 경우에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되고,
- 광역교통시설인 산호대로와 국도67호선의 교통량도 감소 예상
- 경상북도 교통정책과와 부담금의 산정에 도로(중로1-30호선)의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부담금 전액을 공제

《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에 대한 근거 》

- ▶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(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)
 -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·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,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내야 한다.
- 2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- ▶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16조의 2(부담금의 산정기준)
 - ④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.
 - 2.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·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
 - 가.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, 자동차전용도로, 일반국도, 특별시도,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나,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·군·구도
 - 다.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
 - 라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

※ 구미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·고시된 대도시권(대구권)에 포함되어 있어,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.

5. 성과(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)

○ 우회도로로 교통량을 분산하는 계획수립을 통하여 예산절감 효과

- 광역교통시설 부담금(1,478백만원) 전액을 도로개설 비용에 충당

○ 「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」의 배후 연결로 확보를 통한 교통량 분산

- 인근 도로(국도67호선, 산호대로 등)의 상습정체 감소 효과 기대